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12 선고 2021가단2369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4. 12.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9. 11. 7.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26,484,1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484,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9. 11. 7.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 전체의 취소를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 후 보험금을 계속하여 납입함으로써 현재의 해약환급금이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 체결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 전체를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함. 따라서 사해행위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함

판사 나진이

별지